

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송정 119안전센터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전 신축에 필요한 대체 부지를 지원하고 송정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공시설물(청사, 관사등)축조가 가능함으로 공유재산에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
 - 위치 : 구미시 송정동 492 ([형곡구획정리지구 체비지](#))
 - 규모 : 부지 833.4㎡, 건축연면적 726㎡(지상2층)
 - 사업기간 : 2014. 1 ~ 2014. 12
 - 사업비 : 1,320백만원 (건축비)

3. 관계 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11호

송정119안전센터 부지 현황

○ 현재 위치 : 송정동 72-1 (대 516㎡)



○ 이전 위치 : 송정동 492 (대 833.4㎡)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

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구거(구거)·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

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8.4.18, 2008.12.31>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